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(안 제15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